

동 지침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수칙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의 방역관리자가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실시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소모임) 등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제2판)

2021. 3.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I. 개요

- 1. 목적 및 기본원칙 1
- 2.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1

II. 다중이용시설 · 사업장 방역관리자 업무

- 1. 위험도 평가 및 지침마련 단계 2
- 2. 방역지침 실행 단계 10
- 3. 방역지침 준수 점검 단계 14

III. 동호회 등 소모임 방역관리자 업무

- 1. 모임 전 14
- 2. 모임 중 15
- 3. 모임 후 15

IV. 방역관리자 사이버교육 안내 16

▷ 불 임 ◁

- 1. 방역지침[다중이용시설 · 사업장용] 예시 17
- 2. 방역지침[동호회 등 소모임용] 예시 18
- 3. 자주 묻는 질문 (FAQ) 19
-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 29
- 5. 일상적인 지역사회 소독하는 방법 예시 30
- 6.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소독하는 방법(환자발생시) 31
- 7. 직원 건강 모니터링 기록양식(예시) 32
- 8. 사업장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양식(예시) 33
- 9. 마스크 착용 방법 안내 포스터 34
- 10. 잘못된 마스크 착용 35
- 11. 마스크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6

12. 카페·식당 방역수칙 포스터	37
13.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포스터	38
14.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포스터	39
15. 목욕탕·사우나 방역수칙 포스터	40
16.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포스터	41
17. 사업장 방역수칙 포스터	4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

I 개요

1 목적 및 기본원칙

- 사업장,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동호회(소모임)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 음식점·카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유통시설(대형마트·백화점 등), 중소슈퍼, 영화관, 대중목욕탕, 학원, 노래방,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방역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
 - 시설·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시설, 인적측면)하고, 시설·사업장별 맞춤형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실천이행 후 점검 실시
- * 동호회 등 소모임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모임 전, 중 후의 역할 수행

2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 (지정) 사업장·시설 등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필요시 팀 구성)
 - * 규모가 큰 경우, 업체 내 부서별, 사업장별로 지정 가능
 - (역할) ① 관련기관(중앙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장·시설의 밀폐도, 밀집도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사업장·시설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 ②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직원·이용자 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 ③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 ④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방안 제시 등 참고하여 사업장·시설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
- * 사업장·시설 책임자가 방역관리자인 경우, 책임자가 개선방안 마련·실행
- ⑤ 해당시설에서 유증상자 발생시, 지체없이 코로나19검사를 받도록 안내, 유증상자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방안 마련 및 지역보건소 담당자와 비상연락 체계 구축

1 위험도 평가 및 지침마련 단계

- 방역관리자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 준비
 - (시설) 지상 또는 지하 등 시설의 위치, 창문과 출입구를 통한 환기 가능 여부, 책상 또는 테이블 등의 간격 2m(최소 1m) 이상 배치 등
 - (이용자) 이용자 1인당 평균 체류시간, 이용자의 규모 등
 - (직원) 직원의 수, 업무 추진방식,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 방역관리자는 시설·사업장의 위험도 평가 실시
 - 음식점, 영화관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의 방역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표1>, 제조업·사무업 등의 사업장은 직원의 방역관리를 정도를 평가하는 <표3,4> 활용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 * <표1>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험도 자기점검표, <표3>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기점검표, <표4>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
- 위험도 평가 후, 위험도가 중간이거나 높은 항목은 <표2>, <표5>를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자 지침을 마련
 - * <표2>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표5>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 (시설) 소독 방법 및 주기, 환기 방법 및 주기, 물품관리 및 자원관리 방안 등
 - (이용자) 이용자 입장시 확인할 사항(마스크 착용, 시설내 인원들의 밀집도, 거리두기 가능여부 등),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강구(테이블간 거리 두기, 비대면 주문·접수), 안내게시물 부착 등
 - (직원) 코로나19 유증상직원의 출퇴근 관리, 거리두기(2m(최소1m)이상) 준수, 소독제 비치 등 직원 보호, 코로나19 예방교육 등
 - ※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2m(최소1m)거리 두기, 마스크착용 또는 투명격벽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등 지침강화 필요

<표1 :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_____

작 성 자 : _____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가지 중 해당에 V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창문·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불가 (지하에 위치 등)
(밀집도)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이용자간 항상 2m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이상 유지 가능 *테이블간, 좌석간	이용자간 1m거리 유지 불가 *테이블간, 좌석간
(지속도) 이용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	적극적 침방울발생 (노래, 춤, 격한 운동, 응원등)
(관리도) 방역 수칙 준수정도는? (아래 항목에 V표시)	5개 이상	4개	0~3개
준수	미준수	방역 수칙 항목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게시·안내하였는가?	
		손소독제 비치 및 이용자 명부작성 하였는가?	
		직원과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였는가?	
		주기적인 환기(자연환기, 기계 환기)를 실시하였는가?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였는가?	
		(식당·카페)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중 한가지 이상 준수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개선 및 대안			
위험도 종합 평가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4점 이하), 중간(5~7점), 높음(8점 이상)

다만, 위험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표2 :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p>(밀폐도) 공간 내 환기는 가능한가? (공기 중 침방울 농도 감소)</p>	<p>※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기계환기</p> <p>① 야외시설 이용(특히, 침방울 발생 행위시) 유도 및 우선배치</p> <p>② 상시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 문을 개방하여 상시 환기</p> <p>③ 상시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자주 자연환기 및 외부 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기계환기</p>
<p>(밀집도) 이용자 간 1~2m 거리 유지가 가능한가? (사람 간 거리 확보)</p>	<p>※ 시설 면적을 고려한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게시·안내 및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안내문 부착</p> <p>① 비대면 접수(무인 주문·계산기), 대면 접수·계산 시 물리적 장벽(투명 칸막이 등) 설치</p> <p>② 테이블의 간격 2m 이상으로 배정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p> <p>③ 대기하는 줄, 흡연실 등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간에 2m 간격을 표시, 한 방향으로 이동 안내</p> <p>④ 바닥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p> <p>⑤ 그 외 테이블 칸막이 설치 등</p>
<p>(지속도) 이용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어떠한가? (이용자의 체류시간 최소화)</p>	<p>※ 이용 절차 안내문 부착(신속한 이용 유도)</p> <p>① 사전 예약제 운영</p> <p>②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포장, 배달·포장 등 활용</p> <p>③ 시간대별 입·퇴장 제한하거나, 입장 후 1시간 알림 등</p>
<p>(활동도) 이용자·직원의 침방울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행위 줄이기)</p>	<p>※ 침방울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p> <p>((혼자, 함께)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응원, 춤추기, 격한 운동, 공용 그릇 사용 등의 식사 등)</p> <p>기침예절(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사용 후 손소독) 안내</p> <p>① 음식물 섭취 제한(공연장, 영화관, 스포츠관람, pc방 등)</p> <p>② 식사할 때 공용 그릇 사용하지 않고 개별 식기와 집기 사용</p>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관리도)	
방역 수칙 준수 정도는?	
방역관리자 지정 및 활동 (관리의 효율성 증대)	※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활동, 이용자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방역 수칙 준수 및 시설 내 동시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 관리 ①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문 부착·착용안내 ② 출입구, 개별 방(실) 마다 동시 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③ 이용자 대면 시, 손소독제 제공 및 손소독 안내 * 예시 : (음식점) 메뉴판 제공시, 출입 시 손소독제 제공하여 손소독 권고, (택시)탑승자 탑승 시 손소독제 제공하여 손소독 권고 ④ 화장실에 비누, 손세정제 등 비치
이용자 출입 명부관리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등)	※ QR 코드 등 이용하여 정확한 이용자 출입명부 관리 ① 출입하는 이용자에 대해 QR 코드 등 이용하여 출입명부를 관리 ②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이므로, 방문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안내
직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 튼 차단)	※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기본 수칙 교육, 안내문 부착 - 코로나19는 침방울 튼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특징이 있음을 부착 ①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착용 독려
시설의 주기적 환기 (환기를 통한 공기 중 방울 농도 감소)	※ 시설의 주기적 환기 및 환기대장 관리 ① 가능한 경우 상시 자연환기 하고, 불가능한 경우 적어도 매일 3회(회당 10분) 이상 자연환기 ② 기계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부 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연환기를 병행 ③ 냉난방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시간 마다 1회(10분) 이상으로 더욱 자주 자연환기 ④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
자주 손이 닿는 물체 표면 주기적 환경 소독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 주기적 소독 및 소독대장 관리 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 (손이 자주 닿는 곳) 문손잡이, 메뉴판,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공용 물건, 무인 계산기 표면, 승강기 버튼, 계단 손잡이 등 ② 소독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표3 :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는 방역관리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점검표는 예시, 사업장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_____
 방역관리자 : _____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가지 중 해당에 V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창문·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불가 (지하에 위치, 냉장시설 가동 (ex)무인업체 등)	
(밀집도) 직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사업장·흡연실·휴게실 등)	이용자간 항상 2m유지 가능	이용자간 1m이상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거리 유지 불가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좌석간 2m유지 또는 칸막이설치		좌석간 2m 유지 불가	
(균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10명 미만	10명이상 100명미만	100명이상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일반 사무공간)	적극적 침방울 발생(여론조사 기관, 콜센터 등)	
(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유증상자 확진자발생시 대응체계 등 포함)	관리인력등을 구성하여 방역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있음		관리인력등을 구성하여 방역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개선 및 참고 사항				
위험도 종합 평가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 이상)

<표4 :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_____

방역관리자 : _____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결과 (해당에 V표시)	
	예	아니오
① 직원 및 방문자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가? (사업장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② 매일 직원(일용직포함)의 체온측정 및 증상*여부 확인하고 있는가?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③ 근무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가?		
④ 직원 외 방문자의 출입명부 관리를 하는가?		
⑤ 손위생 시설(세수대와 비누) 또는 손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상시 기계환기 가동을 하는가?		
⑦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가?		
(해당사업장만) 보호용구(작업복, 안전모, 고글, 안면보호구, 장갑, 신발 등)를 개인별로 사용하거나 공용사용시 매 사용시마다 소독하는가?		
<input type="checkbox"/> 개선 및 참고 사항		

<표5: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p>(밀폐도)</p> <p>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p> <p>(공기 중 침방울 농도 감소)</p>	<p>※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p> <p>①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은 공간면적, 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p> <p>* 주기적 환기를 위한 환기 담당자 지정 등 방법 활용</p>
<p>(밀집도)</p> <p>직원 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가?</p> <p>(사람 간 거리 확보)</p>	<p>※ 직원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안내문 부착</p> <p>① 책상, 작업대, 의자의 간격 2m 이상으로 배정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p> <p>② 불가능한 경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리 유지 배치, 작업대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물리적 장벽(책상 칸막이 등) 활용 등</p> <p>③ 흡연실, 탈의실, 휴게 공간, 구내식당의 대기 줄 등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용 공간에서는 2m 간격을 표시하고, 한 방향으로 이동 안내</p> <p>④ 회의·보고 전·후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p> <p>⑤ 구내식당의 좌석은 2m 유지 가능하도록 배치 또는 칸막이 설치</p>
<p>(군집도)</p> <p>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p> <p>(한 공간 내 동시 근무 인원 최소화)</p>	<p>※ 직원 분산 등을 위해 근무 형태 안내 및 유도</p> <p>①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휴가제도 마련 및 활성화</p> <p>②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3분의1, 2분의1 등 사회적 거리 유지 가능한 비율) 근무(그 외 재택근무 등 활용)</p> <p>③ 교대근무 시, 교대 조는 시간차를 두고 업무 공간 사용</p> <p>④ 사업장에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p>
<p>(활동도)</p> <p>침방울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p> <p>(침방울 발생 행위 줄이기)</p>	<p>※ 비말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 기침예절(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사용 후 손소독) 안내</p> <p>① 업무 공간 내 음식물 섭취 제한</p> <p>② 식사, 휴게 공간에서 개별용기 사용 및 음식 공유 자제</p> <p>③ 대면 접촉 감소를 위해 영상회의, 서면회의, 전화회의 등 활용, 불가피한 경우 참석인원 및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p> <p>④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p> <p>⑤ 밀폐된 공간 내,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대화 자제 등 침방울 발생 행위 자제 유도</p>
<p>(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p> <p>(사업장 내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하고, 맞춤형 방역지침 마련)</p>	<p>※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활동, 직원들의 방역 수칙 준수 등 관리</p> <p>①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장·시설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시설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p> <p>②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수행</p>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직원의 마스크 착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 튼 차단)	※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기본 수칙 교육, 안내문 부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 코로나19는 침방울 튼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특징이 있음을 부착 ①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 (특히, 계속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직원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유증상자 관리를 통한 감염전파 차단)	※ 매일 직원·방문자 의 체온측정,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관리
근무중 유증상자 확진자발생시 대응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도록 안내)	※ 직원중 발열, 기침 등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직원(일용직 포함) 및 방문자 연락망 확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	※ 일시적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 및 방문자의 연락망 확보 ①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이므로, 방문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안내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 물품 매일 1회 이상 소독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 소독 및 방역 수칙 교육 및 안내 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1회이상 소독 실시 * (손이 자주 닿는 곳) 문손잡이, 메뉴판,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공용 물건, 무인 계산기 표면, 승강기 버튼, 계단 손잡이 등 ② 소독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손 위생 시설 비치 (손 위생 통한 감염전파 차단)	※ 손씻기 안내문 부착(출입문, 이용 공간 등) ① 사업장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 안내문 부착하여 손 소독 유도 ② 화장실에 비누, 손세정제 등 비치
(해당사업장) 보호용구를 개별적 사용 또는 사용 전·후 소독 (보호용구를 통한 감염 전파 예방)	※ 개인보호용구 개별 사용 또는 공용사용시 사용 전·후 소독 철저 ① 개인방역수칙과 관련된 개인보호용구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안내(안내문 부착, 안내 방송 등)

2 방역지침 실행 단계

1. 시설 관리

□ 청소 및 소독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 3-4판) 참조

- 사업장·다중이용시설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 1주일에 1회 이상 사업장 내 표면전체를 소독
 - 준비된 소독제를 천(헝겂 등)에 적신 후 손이 자주 닿는 곳(출입구 손잡이, 탁자, 공용pc, 스위치 등)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하루 1회이상 소독*
 - * 접촉이 빈번한 공용사용 물품의 표면은 더 자주 소독 필요
 -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접촉식 장치(스위치 등)는 비접촉식 장치로 변경
- 소독시,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방수장갑, 앞치마, 장화 등 착용, 소독후, 소독한 날짜, 범위 등 소독일지를 작성

□ 환기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
- 창문 등을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3회 이상) 실시

□ 물품 및 자원 관리

- 사업장·영업장 소독·위생 관련 물품 확인 및 준비
 -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종이타월, 화장지, 체온계 등
- 출입구나 화장실 등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 등 위생 관련 물품 비치

□ 안내문 부착

-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 부착
 - *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자료 등을 활용

□ 사업장의 흡연실,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 집중 관리 실시

- 사람 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공용 공간 이용시 마스크 착용,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주기적 환기 및 표면소독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공용시설 집중관리 내용>

▶ 흡연실(흡연부스)

- 흡연장소는 사람 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간격표시 (스티커, 페인트 등을 이용해 거리 표시 등)
-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부스는 1인씩 이용하는 등 흡연자간 2m(최소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게시) 및 관리

▶ 구내식당

- 시차 분산 운영
- 배식·퇴식시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간격유지 (스티커 등으로 간격표시)
- 좌석은 한칸 띄어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 식사(투명칸막이 설치 등)하고, 대화는 자제하도록 관리

▶ 탈의실샤워실

- 사람간 2m(최소1m)이용 가능하도록 관리(샤워실,락커 등 한 칸 띄기),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토록 관리
- 락커 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표면 소독(일 1회이상) 및 주기적 환기(일 3회이상)

▶ 휴게실

-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고, 사람간 2m(최소1m)이용 가능하도록 관리 (거리유지 가능하도록 테이블 배치 조정 등), 휴게실 이용시 마스크 착용
- 손이 자주 닿는 탁자, 의자, 정수기 표면 등은 소독(일 1회), 주기적 환기(일 3회이상)
- 개인컵, 개인수저 등 사용안내, 공동물품 이용은 자제하고 사용시 소독철저

▶ 통근차량

- 이용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자제 안내
- 손이 자주 닿는 손잡이·좌석 등받이 등 소독(일 1회 이상)

▶ 민원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마스크 착용 안내,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손이 자주 닿는 민원접수대, 무인민원발급기 등 소독(일 1회 이상)

2. 이용자 관리

□ 입장 관리

- 마스크 착용, 가급적 최소시간 머무르기 등 안내문을 게시
- 이용자 간의 2m(최소 1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장 이용객 조절하는 등 밀도 조절*을 위한 노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이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명단작성 및 코로나19 증상*유무 확인 의무시설**은 명단작성 거부 또는 열이 나는 이용객 등은 입장 제한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 전국 또는 지자체별로 행정명령 시설이 상이한바 확인 필요(유흥업소, 동전 노래방 등)

□ 이용자 안전 관리

- 이용객 간 2m(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
 - 스티커로 간격표시, 대기줄 분리,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의 방안을 활용
- 물리적인 간격 확보가 어려운 경우, 투명 칸막이 설치, 이용객 수 제한, 이용객 간 시간 간격 유지 등
- 손 소독제를 비치 또는 화장실 외 영업장 내 세수대 설치하여 이용객이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
- 이용객이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이용객의 입·퇴장, 이동이 분산되도록 유도

□ 예방수칙 게시·안내

- 이용자 대상으로 예방수칙(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

3. 직원 관리

□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즉시 검사하도록 조치
 -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매일 직원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및 기록
- 일과 중, 호흡기증상·발열 등 확인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 직원 보호 및 교육

- 직원들이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 이용자와 직원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
 - 환경에 따라 마스크 외 추가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추가 보호 방안 고려
-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접객 업무를 맡은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교육
- 행사나 회의 등은 취소·연기 또는 축소
 - 가능하면 화상·전화회의 등 비접촉 방식으로 변경,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연락처 작성, 증상 유무 확인
 - 손씻기, 기침·재채기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식사시간에는 식사시간 분리, 좌석 간 간격 두기, 지그재그형 배열 등으로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

□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 정보, 개인 위생수칙·행동요령, 사회적 거리 두기 교육

3 방역지침 준수 점검 단계

□ 점검 실시

- 방역관리자는 사업장·시설 내 방역지침 준수 등 방역활동을 점검·평가
- 사업장·시설 책임자는 직원 등과 함께 매월 1회* 이상 방역관리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 실시

* 평가횟수는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시설·사업장 등의 협의를 통해 결정

□ 개선 필요사항은 조치하고, 책임자·방역관리자·직원은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간 지지

Ⅲ 동호회 등 소모임 방역관리자 업무

❖ 동호회 등 소모임은 비대면·비접촉 모임 추진을 우선

- 불가피하게 대면모임(오프라인) 추진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필요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모임 가능한 인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1 모임 전

□ 유증상자 참석 자제요청 등 방역수칙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모임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
-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손 씻기, 기침 예절, 소독, 사람간의 거리두기 등) 미리 숙지하도록 안내

□ 모임 장소 선정

- 밀집·밀폐도가 낮은 야외 공간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선정
-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탁자·테이블이 배치된 장소 선택하고 이용하기

2 모임 중

□ 모임규모 및 시간

- 모임은 가능한 소규모*로, 모임시간은 최소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모임 가능한 인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모임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파악

□ 개인방역 수칙 준수

- 탁자 간격 또는 사람간 앞·뒤·좌·우로 2m(최소 1m)이상 거리 확보

- 모임시 마스크 착용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혼자, 다함께)노래하기, 응원하기, 음식물 섭취) 등은 자제

- 손씻기(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또는 손소독제 사용), 악수·포옹 등 신체 접촉 자제

- 기침예절 준수(기침·재채기 할 경우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코 가리기)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 창문열기가 어려운 경우 주기적 환기(또는 환기되도록 요청)

* 에어컨의 풍량은 최소한으로 하되,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하기

- 모임시 필요한 소품(책 등)은 개인용품 사용하고, 공용사용은 자제

3 모임 후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즉시 검사받도록 안내

IV 방역관리자 사이버교육 안내

□ 교육운영 안내

○ 교육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 구성원 및 방역관리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등

○ 교육내용

- (이론편) “어서와, 방역관리자 업무 교육은 처음이지?”
- (실천편)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결혼식장, 카페 모의훈련

○ 홈페이지 주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 <http://ncov.kohi.or.kr>

<수강신청 방법>

① 방역관리자 업무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신규 회원은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준회원은 핸드폰 번호(ID)로 가입
- *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존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② “방역” 또는 “업무” 등 관련 단어를 입력하여 과정 검색

③ “방역관리자 업무 교육(이론·실천편)” 과정을 수강신청

- * 차시별 학습 진도율이 100% 되어야 최종학습이 이수됨
- * 모든 학습완료 후 마이페이지-수료증출력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학습문의: 사이버교육 학습지원센터 1600-8810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 시청 (이수증 미발급)

* 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영상자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영업장 방역지침

* 생활 속 거리두기 유형별 세부지침 활용 가능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해당시설에서 유증상자 발생 시 지체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직원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하기
-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은 매일 1회 이상 표면을 소독하기
-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
 -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보지 않도록 하기
-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 실시하기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 노래 부르는 시설 갖춘 경우 사용 금지
-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가급적 명부를 비치(또는 QR 코드 등 이용)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동호회 방역지침**[모임 전]**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모임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 모임 장소 선택시, 밀집·밀폐도가 낮은 야외공간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선정하기

[모임 시]

- 모임은 가능한 소규모로 하고, 모임 시간을 최소화하기
- 모임 장소가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기계환기를 상시 가동하고 2시간마다 10분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바람 방향은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탁자 사이 또는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이상 둘 수 있도록 하기
- 모임 장소 도착 시, 구성원 모두 손씻기(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또는 손소독제 사용)
 - 기침예절(기침·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 모임 중 악수 등 신체적 접촉, 비말이 발생하는 행위(큰소리치기, 노래 부르기, 구호 선창, 응원 등) 하지 않고, 구성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고 모이기
- 모임시 마스크 착용

[모임 후]

- 모임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3~4일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소 이용하여 검사받기

□ 코로나19 일반 질문**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어떤 질병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Q2.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 1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3.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환자와 다른 사람이 약 2m 이내로 밀접하게 접촉할 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무증상환자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나요?

-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것입니다.
- 코로나19의 많은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일부는 질환의 초기라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경미한 기침 증상만 있거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무증상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연구가 지속되고 있어, 결과가 발표되는 공유할 예정입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5.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위험한가요?

- 흡연자는 폐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폐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코로나19에 걸리면 비흡연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smoking and COVID-19

Q6.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사나요? 표면 특성에 따라 다른가요?

- 바이러스는 몸 밖으로 나오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사멸합니다. 하지만 금속, 플라스틱 등 딱딱하고 습기가 없는 무생물의 표면에서는 몇 시간 정도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침 등의 수성용매에서 최대 6~7일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Q7.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8. 마스크를 쓰면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가 있나요?

왜 마스크를 정확하게 잘 써야 하나요?

- 대화, 호흡 또는 기침을 할 때 사람이 생성하는 대부분의 비말은 $1\mu\text{m}$ (마이크로미터)이며, 이러한 입자 크기는 마스크에 의해 어느 정도 차단 될 수 있고, 착용자의 손이 주변 환경을 접촉 한 후 무의식적으로 입과 코에 닿을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마스크 착용만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염된 손이 입이나 코를 만지면 감염이 되므로 손 씻기 등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 또한,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등)이 있는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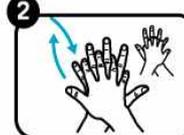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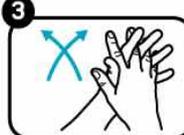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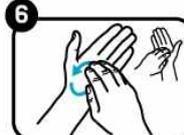
<마스크 착용, 사용, 제거 및 폐기 방법(WHO)>

1. 마스크 착용 전에 비누와 물로 올바르게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준수하십시오.
2.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3.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십시오. 손으로 마스크를 만진 경우,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 또는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4. 마스크가 젖은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5. 마스크를 제거하려면 마스크의 전면만 만지지 말고 귀걸이를 잡아 제거하십시오.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즉시 버린 다음 비누와 물로 올바르게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로 손 위생을 준수하십시오.

※ (출처) WHO, when and how to use masks, advice for public

Q9. 손씻기가 더 중요하다던데? 손 소독제의 효과는?

-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손을 씻거나 알코올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감염률을 60% 이상 감소한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보고했습니다.
-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에틸알코올만으로도 사멸하는데 에틸알코올은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을 깨뜨려 핵산을 더 이상 숙주 세포에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 에틸알코올을 70% 이상 포함한 손 소독제도 이런 원리입니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비누를 이용한 세균제거 효과는 96%, 알코올을 포함한 손소독제는 95%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참고 : 올바른 손씻기 방법]	
- 손 씻을 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손씻기 6단계 준수)	
<p>※ 잘 씻기지 않는 손 부위</p> <p>● 대부분 씻김 ● 비교적 씻기지 않음 ● 거의 씻기지 않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손바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손등</p> </div> </div> <p>* 출처 : Taylor L(1978). An evaluation of hand washing techniques-1.NursingTimes. 74:54-55</p>	<p>※ 올바른 손씻기 6단계</p>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fr 1fr 1fr; ga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1 손바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 손등</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3 손가락 사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4 두 손 모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5 엄지 손가락</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6 손뼉 밀</p> </div> </div>

Q10. 바이러스는 소독을 하면 진짜 없어지는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에틸알코올, 과산화수소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사멸합니다. 이 소독제들은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을 망가뜨려 핵산을 더 이상 숙주 세포에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Q11. 청소와 소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세제(또는 비누)와 물로 하는 청소는 표면에 묻은 세균, 바이러스, 먼지, 불순물을 제거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춥니다. 소독은 표면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병원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병원체를 소독하면 감염 확산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Q12. 청소만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적어도 2~3일 동안 다른 물질의 표면에 서 생존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염된 표면은 사람이 이러한 표면과 직접 접촉 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청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않지만 닦아낼 수는 있으므로 병원체의 수가 줄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 인해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생각되면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하면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접하는 부분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3. 일상 청소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상 청소나 소독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입니다.
- 일상 소독은 시설별 자체 소독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시행하되,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인 소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관리자 관련 질문

Q1.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종교모임 같은 소모임을 할 때에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 시설·사업장 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모임에도 방역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시설·사업장·동호회 모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Q2. 방역관리자는 누구를 지정하나요? 사업장·시설 책임자(사업주, 모임의 장 등)가 방역관리자가 되어야 하나요?

- 방역관리자는 구성원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 시설·사업장·동호회 모임의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구성원은 시설·사업장·동호회의 방역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Q3. 위험도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처벌이나 규제를 받게 되나요?

- 위험도 평가점수가 높다고 처벌이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위험도 평가는 시설·사업장 스스로 자가 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방역 관리 상태(밀폐, 밀집, 방역 수칙 준수 정도 등)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Q4. 위험도 평가는 언제 진행 하는 것이 좋은가요?

- 위험도 자가 평가는 시설·사업장·동호회 모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주기 등을 결정하여 수행하면 됩니다.
- 다만, 단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따른 개선 조치를 수행 할 것을 권고합니다.

Q5.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위험도 평가를 해야 하나요?

- 위험도 평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가장 혼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시간을 기준으로 관리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 적극적 방역관리 수행을 통하여 코로나19의 감염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6. 자연환기가 불가 한 경우 공기 청정기로 대체 할 수 있나요?

- 공기청정기와 관계없이 주기적 환기(하루 3회 이상)를 권합니다.
- 환기를 통해 코로나 19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Q7. 시설 소독 시 어떤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나요?

-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 된 소독제를 사용하며,
- 소독제 사용 전에는 반드시 소독제 라벨에 쓰여 있는 용량과 용법 등 권장사항을 읽고, 사용 시 준수해야 합니다.

Q8. 확진자가 시설을 이용 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확진자가 시설 이용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을 파악하고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소독 등의 조치를 이행합니다.

Q9. 이용자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방역관리자는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알고 최대한 협조하도록 안내문 게시 및 설명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합니다.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관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용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Q10. 방역지침만 제대로 이행하면 안전한가요?

- 코로나19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으나, 책임자·종사자(직원)·이용자·모임 구성원 등 모두의 방역지침을 준수 노력을 통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붙임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21.3.2기준)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RS-CoV-2 : Coronaviridae family, Betacoronavirus genus Sarbecovirus subgenus에 속함
전파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이내)하여 발생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 이외, 표면 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 에어로졸 생성 시술 :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4일 (평균 5~7일)
진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유전자(PCR)검출 바이러스 분리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증상 및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이치료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른 해열제, 수액공급, 진해제 등 대증치료 호흡 곤란 시 산소를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호흡이나 체외막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시행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일부 확인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긴급 승인이 되었거나, 긴급 승인을 준비 중인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계 치명률은 지역, 인구집단연령 구조, 감염 상태 및 기타 요인에 의해 0.1%~25%로 다양함 전세계 치명률은 0.00%~1.63%(중위값 0.27%)로 보정 후 0.00~1.54%(중위값 0.23%) (WHO,2021)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약처에서 승인된 코로나19백신(향후 업데이트 예정)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주위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1. 지역사회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

가.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필요에 따라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나.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

◆소독 부위 예시

-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접촉하는 장치 등
- (2)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3)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방법)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500ppm)이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횟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 500 ppm = 물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10ml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등 유발 하며 두통을 유발하는 불쾌한 냄새 등으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풍기 사용과 함께 창문을 개방해서 사용

2.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출퇴근이 빈번한 경우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어야 함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 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제

3.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붙임 6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하는 방법(환자발생시)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붙임 7, 8),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3.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한다.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세탁한다.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15.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발행일 : 2020.2.27.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2020. 07. 17



주의!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질병관리청 2020.01.14.

마스크 착용!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 ①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여기서 반드시 착용하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구분	1단계(생활방역)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지역 유행 단계	지역 유행 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 (일반 시설과 별도로 부가)	중점·심각관리시설* 대중교통, 크루저·여객, 모의시험, 주어진료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교육·취업 시설장 (공연장, 유흥업 등 제외),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1단계 시설, 장소에 일반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유흥업 등 제외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 중점관리시설(야구): 운동시설 5종 (골프, 볼링 등), 유원지, 단원주택, 강릉주택, 물고기, 민물고기, 노견연습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사당·귀족(회원)시설·유기물처리·재활용장·시설유기·싱크대 등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4종): PC방, 결혼식장, 집례식장, 학원(교육소 모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유흥장, 오락실·영화관·실내체육시설, 아이스링크, 상점·마트·백화점(한국제조업협회상 품목소재면적 300㎡ 이상)·특수상·스타디움
 * 회의 시설·장소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질병관리청 2020.01.14.

마스크 착용!

서로를 지키는 첫 걸음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 24개월 미만 영유아**
 -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집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호흡기 질환 등)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질병관리청 2020.01.14.

마스크 착용!

나와 가족을 위한 '한 장'의 위력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 ✓ 수술용 마스크
-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 방사형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못가져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질병관리청 2020.01.14.

마스크 착용!

생활방역 필수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 위반당사자**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횡수에 관계없이)
-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 ✓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금)부터 시행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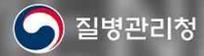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 *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 ✓ 관할 지자체별 행정명령 및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 ncov.mohw.go.kr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1.03.23.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의 동시 이용 가능한 인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서는

최대 명입니다.



카페·식당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주요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출입자 명부** QR 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하기

★ **식사나 음료 섭취 전후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 중 대화 자제하기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가 없다면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생활방역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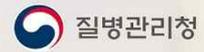
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 주요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
- ★ **출입자 명부** QR 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하기
- ★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 **음식 섭취하지 않기** 물, 무알콜 음료 제외
- ★ **구령, 구호, 고강도 운동 자제하기**



-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2021.03.23.



안녕하세요!

우리 시설의
동시 이용 가능한 인원은
최대 명입니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주요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
- ★ **출입자 명부** QR 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하기
- ★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 **음식 섭취하지 않기** 물, 무알콜 음료 제외



•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2021.03.23.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의 동시 이용 가능한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에서는
최대 **10** 명입니다.



목욕탕·사우나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주요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출입자 명부** QR 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하기

★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공용공간, 탈의실 등 대화 자제하기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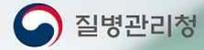
★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음식 섭취하지 않기** 물, 무알콜 음료 제외



-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2021.03.23.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의 동시 이용 가능한 인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 단계에서는

최대 [] 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생활방역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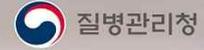
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 주요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
- ★ **출입자 명부** QR 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하기
- ★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 **가급적 짧게** 마무리기
- ★ **매장 내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 **음식 섭취하지 않기** 물, 무알콜 음료 제외 / 카페 식당 해당 없음



-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2021.03.23.



사업장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이생기면 즉시 퇴근하고 검사 받기**
주요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 중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하기**
- ★ **회의나 출장은 가급적 비대면 영상회의로 대체하기**
- ★ **공용공간에서 음식섭취 자제하기**
- ★ **주기적으로 환기, 소독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